「간이무선국·우주국·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」일부 개정(안)

1. 개정이유

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 발전에 따라 새로운 통신방식도입을 위하여 기술기준을 개정하고, 주파수 이용 효율을 증대하기 위함

2. 주요내용

- 가.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을 LTE-V2X(5855~5875 Nb, 제19조제1항)와 WAVE(5895~5925 Nb, 제19조제2항) 대역으로 항을 분리하여 기술방식별로 기술적 사항을 규정
- 나. 기술방식별로 점유주파수대역폭, 안테나공급전력, 등기등방복사전력 등 규정
- 다. 인접채널간 및 타 무선설비와의 전파 혼·간섭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조업체 및 관련 산업체 건의에 따라 대역외 발사 등 규정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전파법 제45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 없음

라. 기 타 : 신 · 구조문대비표, 별첨

⊙ 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-00호

「전파법」 제45조(기술기준)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7호(권한의 위임·위탁)에 따라 「간이무선국·우주국·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」(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1-35호, 2021. 12. 28)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.

2022년 00월 00일 국립전파연구원장

「간이무선국·우주국·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」일부 개정(안)

「간이무선국·우주국· 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」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9조(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) ① 5855~5875 Mb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 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 胍 이하일 것
- 2. 변조방식은 디지털변조, 접속방식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방식(OFDMA)일 것
- 3.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5865 ₩2일 것

- 4. 안테나공급전력은 200 mW 이하, 등가등방복사전력은 4 W 이하일 것
- 5. 주파수허용편차는 ±0.1×10⁻⁶ 이내일 것
- 6.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

가. 대역외발사

점유주파수대역폭 끝으로부터 이격 주파수	기준값 (평균전력)	분해대역폭
± 0-1 MHz	-21 dBm	30 kHz
± 1-5 MHz	-10 dBm	1 MHz
± 5-20 MHz	-13 dBm	1 MHz
± 20-25 MHz	-25 dBm	1 MHz

나. 스퓨리어스발사

주파수 범위	기준값	분해대역폭
1 때 미만	-36dBm	100 kHz
1 때 이상	-30dBm	1 MHz

- ② 5895~5925 Mb 주파수 대역의 전파를 사용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- 1. 점유주파수대역폭은 10 胍 이하일 것
 - 2. 변조방식은 디지털변조, 접속방식은 반송파감지다중접속/충돌회피방식 (CSMA/CA)일 것
 - 3.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5900 Mb, 5910 Mb, 5920 Mb 일 것
 - 4. 안테나공급전력은 100 mW 이하, 등가등방복사전력은 2 W 이하일 것
 - 5. 주파수허용편차는 ±20×10⁻⁶ 이내일 것
 - 6. 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

가. 대역외발사

중심주파수로부터 이격 주파수	기준값 (평균전력)	분해대역폭
\pm 4.5 MHz	0 dBm	100 kHz
\pm 5.0 MHz	-26 dBm	100 kHz
± 5.5 MHz	-32 dBm	100 kHz
± 10 MHz	-40 dBm	100 kHz
± 15 MHz	-50 dBm	100 kHz

나. 스퓨리어스발사

주파수 범위	기준값	분해대역폭
1 에 미만	-36dBm	100 kHz
1 때 이상	-30dBm	1 MHz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- 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 및 무선기기는 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발사하는 중심주파수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.
 -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따른다.
- 제3조(표시에 관한 사항) 제19조에 따른 무선설비를 제조하는 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"주파수 대역은 정부의 지능형교통시스템 정책 및 주파수 분배·회수·재배치 정책 등의 조치에 따라

변경될 수 있음"을 명시하여 운용자 및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.

제4조(다른 고시의 개정) ① 「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 용 무선기기」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2-21호, 2022.5.10.) 제4조제 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주파수	안테나공급전력	비고
5855-5875 MHz	200 mW 이하 (등가등방복사전력은 4 W 이하)	「간이무선국·우주국·지 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 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
5895-5925 MHz	100 mW 이하 (등가등방복사전력은 2 W 이하)	준」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지능형교통시스템 서비스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육상이 동국

부 칙

- 제1조(경과조치)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합성평가를 받은 무선설비 및 무선기기는 이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. 다만, 주 파수는 이 규정에 따라야 한다.
 - ② 이 고시 시행 당시 접수되어 처리 중에 있는 적합성평가 신청 건에 대하여는 이 규정을 따른다.
- 제2조(표시에 관한 사항) 제4조제12호에 따른 무선설비를 제조하는 자 또는 판매자는 해당 기기 또는 사용자 설명서에 "주파수 대역은 정부의 지능형교통시스템 정책 및 주파수 분배·회수·재배치 정책 등의 조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"을 명시하여 운용자 및 사용자에게 충분히 알려야 한다.

② 「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」(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22-14호, 2022.7.19.) 중 [별표 1]의 제3호 파목 및 제5호 라목 제12 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 1]

3. 간이무선국·우주국·지구국의 무선설비 및 전파탐지용 무선설비 등 그 밖의 업무용 무선설비의 기기

대상기자재		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					적합성평가 유형					
		전자파	-1-1-1		전자파 인체보호				등록	기기	기타 사힝	항
			무선	유선	전자파 흡수율	전자파 강도	적합 인증	지정 시험 기관	자기 시험	부호		
파. 지능형교통 시스템용	1)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(5855-5875岴)	0	0				0			ITSRL		
무선설비	2) 기지국의 송수신장치 (5895-5925吨)	0	0				0			ITSRW		

5. 신고하지 아니하고 개설할 수 있는 무선국용 무선설비의 기기

	대상기자재		적합	적합성평가기준 적용분야			적합성평가 유형						
			전자파	7] 15]		전자파 인체보호		적합	적합등록		기기 - 부호	기타 사항	
				전하시 적합성	무선	유선	전자파 흡수율	전자파 강도	인증		자기 시험	十 圣	71.8
라.	. 특정소출력	12) 지능형교통 시스템용	가) 5855-5875崛 의 무선기기	0	0				0			ITSOL	
	무선기기	시스템 장 무선기기	나) 5895-5925 屆 의 무선기기	0	0				0			ITSOW	

<u>신·구 조문 대비표</u>

현 행	개 정 안				
제19조(지능형교통시스템용무선설비)	제19조(지능형교통시스템용무선설비)				
<u><신 설></u>	① 5855∼5875 Mb 주파수 대역의 전				
	<u>파를 사용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</u>				
	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				
	<u>각 호와 같다.</u>				
	1.점유주파수대역폭은 20 胍이하일 것				
	2. 변조방식은 디지털변조, 접속방				
	<u>식은 직교주파수분할다중접속</u>				
	<u>방식(OFDMA)일 것</u>				
	3.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				
	<u>5865 账일 것</u>				
	4. 안테나공급전력은 200 mW 이하,				
	<u>등가등방복사전력은 4 W 이하</u>				
	<u>일 것</u>				
	5.주파수허용편차는 ±0.1×10 ⁻⁶ 이내일 것				
	6.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				
	<u>가. 대역외발사</u>				
	점유주파수대역 기준값 분해				
	끝으로부터 (평규정렬) 대역폭				
	이격 주파수				
	± 1-5 MHz				
	$oxed{ \pm 5-20 \text{ MHz} } oxed{ -13 \text{ dBm} } oxed{ 1 \text{ MHz} } \ oxed{ \pm 20-25 \text{ MHz} } oxed{ -25 \text{ dBm} } oxed{ 1 \text{ MHz} }$				
	나. 스퓨리어스발사				
	<u>의 의 의 의 교육</u> 주파수 범위 기준값 분해대역폭				
	1 대 미만 -36dBm 100 kHz				
	1 GHz 이상 │ -30dBm │ 1 MHz				

<기존제19조 규정을 제2항으로 이설>

5855~5925 Mb 주파수 대역의 전 파를 사용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- 1.점유주파수대역폭은 10 2 이하일 것
- 2. 변조방식은 디지털변조일 것
- 3.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<u>다</u> 음 표를 따를 것. 다만, 차량 안전 을 위해 5번 채널은 제어용으로만 사용할 것

채널	1	2	3	4	5	6	7]
주파수 (Mb)	5860	5870	5880	5890	5900	5910	5920	

- 4. 안테나공급전력은 100 mW 이하, 등가등방복사전력은 2 W 이하 일 것
- 5.주파수허용편차는 ±20×10⁻⁶ 이내일 것 6. 스퓨리어스 영역에서의 불요발사 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 <신 설>

- ② 5895~5925 Mb 주파수 대역의 전 파를 사용하는 지능형교통시스템 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(현행과 같음)
- 2. 변조방식은 디지털변조, 접속방 식은 반송파감지다중접속/충돌 회피방식(CSMA/CA)일 것
- 3. 발사하는 전파의 중심주파수는 5900Mb, 5910 Mb, 5920 Mb 일 것

- 4. (현행과 같음)
- 5. (현행과 같음)
- 6.불요발사는 다음의 기준값 이하일 것

가. 대역외발사

중심주파수로부터	기준값	분해	
이격 주파수	(평균전력)	대역폭	
\pm 4.5 MHz	0 dBm	100 kHz	
± 5.0 MHz	-26 dBm	100 kHz	
± 5.5 MHz	-32 dBm	100 kHz	
± 10 MHz	-40 dBm	100 kHz	
± 15 MHz	-50 dBm	100 kHz	

나. 스퓨리어스발사

주파수 범위	기준값	분해대역폭
1 础 미만	-36dBm	100 kHz
1 趾 이상	-30dBm	1 MHz

주파수 범위	기준값	분해대역폭
1 础 미만	-36dBm	100 kHz
1 础 이상	-30dBm	1 MHz